

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[별표 1]

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(제4조제1항 관련)

구분	지정기준
조직	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
인력	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갖추는 것 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중앙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센터의 장 1명 -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-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-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7년 이상이거나,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또는 경력단절 예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여성 또는 고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-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-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취업·창업지원을 위한 상담, 교육 등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할 수 있는 전문인력 2명 이상 - 지역지원센터 평가, 컨설팅 및 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담당자 3명 이상 -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·운영 및 사업 홍보 담당자 2명 이상
시설 및 장비	-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, 회의실을 각 1개 이상 확보할 것 - 중앙지원센터의 인력이 일반사무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책상, 컴퓨터, 전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것